

# 평생교육원 운영규정

제정 2021년 03월 01일  
개정 2022년 03월 01일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원의 명칭은 건신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라 한다.

**제3조(설립목적)** 본원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치)** 본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27번길 40 건신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.

## 제2장 조 직

**제5조(원장)** ①본원은 원장을 두며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**제5조2(하부기관)** ①본원에는 평생교육운영부와 평생교육관리부를 둔다.(신설 2022.3.1.)

② 평생교육운영부에는 학점은행제, 전문교육과정, 예체능교육과정 등을 분장하고 평생교육관리부에는 학점은행제(사회복지실습 및 보육실습), 자격증 취득준비과정 등과 시설 및 회계 관리 업무 등을 분장한다.(신설 2022.3.1.)

③ 부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신설 2022.3.1.)

**제6조(교직원)**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

## 제3장 교 육 과 정

**제7조(과정)** 본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교양교육과정, 예체능교육과정, 전문교육과정,

자격취득준비과정, 학점은행제 과정을 두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 후 교육과정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**제8조(학습기간)**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별로 정해진 기간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9조(지원자격)** 본원의 수강 대상자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연령, 경력, 학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0조(선발방법)** 본원의 각 교육과정별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1조(수강절차 및 학습비)** 본원에 등록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[별표 1]를 제출해야 하고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학습비의 반환)** 학습비의 반환은 ‘평생교육법시행령’ 제 23조에 따라 반환한다.

**제13조(입학시기)** 본원의 입학시기는 원장이 정하되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수업기간)** 본원의 각 교육과정별 수업기간은 원장이 정한다. 단, 학점은행제 과정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.

**제15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** 본원의 수료자는 각 과정별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 하며, 수료증[별표 2]을 교부할 수 있다.

## 제4장 자 치 활 동

**제16조(자치회)**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둘 수 있다.

**제17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)** 학습자는 교육원 학습기간 동안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## 제5장 포 상 및 징 계

**제18조(포상)**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**제19조(장학금)**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0조(징계)** 1. 학습자가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.

2. 징계의 종류는 근신, 전학, 제적으로 구분한다.

### 제6장 재정 및 회계

**제21조(회계연도)** 본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22조(재정)** 본원의 재정은 학습비, 보조금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23조(예산편성)** 본원의 모든 세입금·세출금은 본 대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.

**제24조(회계집행)** 회계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의 재무회계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25조(강사료)** 본원의 강사료 책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26조(감사)** 본원의 감사는 본 대학교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[별표 1]

## 수 강 신 청 서

202 학년도 학기				No.		
수 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학(학사)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용학(학사, 전문학사)			
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학(학사, 전문학사)		<input type="checkbox"/> 교 양			
지 원 자	성 명				장 학 구 분	
	주민번호					
	※ 아래는 재수강자중 변경사항이 있을때만 작성합니다.					
	주 소				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보훈대상자	
	집 전 화					
	핸 드 폰					
최종학교	고졸, 중퇴(2년제, 4년제), 전문대졸, 대졸, 대학원졸					
E - mail						
수 강 신 청 내 역	구 분	과 목 명	학 점	요일, 시간	금 액	비 고
	1					
	2					
	3					
	4					
	5					
	6					
	7					
	8					
합 계						
※ 장학대상자는 해당서류(국가보훈대상자 관련) 제출 요망						
202 년 월 일						
지원자 성명					①	
<b>건신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귀하</b>						

[별표 2]

제   년 - 호

수   료   증

성       명:

교   육   과   정:

교   육   기   간:

위 사람은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○○○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  월   일

건신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